

## 제 7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

### 제 7.1 조 목적

이 장의 목적은 다음을 통해 양 당사국간 무역을 증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.

- 가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개선하는 것
- 나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, 그리고
- 다. 양 당사국간 공동협력을 제고하는 것

### 제 7.2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

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며,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### 제 7.3 조 적용범위

1. 이 장은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모든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,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.

2.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장은 제6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제16장(정부조달)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해 정부기관이 마련한 구매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## 제 7.4 조 국제 표준

1.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4항 및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범위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,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.

2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의 목적상 국제 표준,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를 판정할 때,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 채택한 협정 제2조,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,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(G/TBT/9 문서의 부속서 4)을 적용한다.

#### 제 7.5 조 기술규정의 동등성

1.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국의 기술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납득하는 한,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2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

이 있는 경우,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.

## 제 7.6 조 적합성 평가절차

1.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. 양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2.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,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.
3. 제2항에 따라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에 앞서, 양 당사국은 개별 적합성 평가결과의 영구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된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능력과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.
4.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특정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자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하면서 그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기관을 인정 또는 달리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.

5. 양 당사국은 각각의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 교섭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러한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.

## 제 7.7 조 투명성

1.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중앙통지문등록처에 통지문을 제출할 때, 이와 동시에 제7.9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의 다른 쪽 당사국 대표에게 다음을 전자적으로 통지한다.

- 가. 제안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, 그리고
- 나.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, 건강, 환경보호 또는 국가 안보상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자국의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

2.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에 부합하며 양 당사국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한다.

3.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지는 통지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포함한다. 가능한 경우, 양 당사국은 영문으로 된 통지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한다.

4. 안전, 건강,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각 당사국은 대중과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

의 통지 다음 날부터 최소 6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. 당사국은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5.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접수한 중요한 의견에 대한 답변 또는 그 요약을 최종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를 공표하는 날보다 늦지 않은 때에,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,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한다.

6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7. 기술규정의 채택과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이 제안된 기술규정의 통지 다음 날부터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경우, 당사국은 이 요청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데 비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8. 양 당사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료이고 공중이 접근 가능한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9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입국항에 유치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을 유치하는 이유를 수입자에게 즉시 통지한다.

## 제 7.8 조 기술협력

1. 양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특히 다음을 위해 협력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.

가. 이 장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

나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는 것

- 다. 인적자원 양성을 포함하여 표준화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련 기관을 강화하는 것
  - 라. 국제기구 내에서의 참가 및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표준화, 기술규제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
  - 마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및 개선에 있어 협력을 제고하는 것, 그리고
  - 바. 양 당사국 영역의 정부·비정부 표준화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당사국의 특정분야 제안에 대한 검토를 촉진하는 것
2. 다른 쪽 당사국의 유사한 기술규정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그 다른 쪽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비밀정보를 제외하고 그 기술규정 개발 시 의존한 관련 정보, 연구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## 제 7.9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

- 1. 양 당사국은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2. 위원회는
  - 가. 이 장의 이행,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한다.
  - 나. 표준,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, 채택,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다룬다.
  - 다. 제7.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제고한다.
  - 라. 상호인정협정 교섭을 위한 절차를 촉진한다.
  - 마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제3자 사안에 대한 양 당

- 사국 각각의 견해를 포함하여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- 바. 표준,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, 지역 및 다자 협의체에서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.
- 사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협의한다.
- 아.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상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,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한다.
- 자.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,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.
- 차.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 위원회에 보고한다.
- 카.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. 그리고
- 타. 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한다.

3. 양 당사국이 제2항사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, 그러한 협의는,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, 제23.4조(협의)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.
4. 위원회는 다음 기관에 의해 조정된다.
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, 그리고
- 나. 폐루에 대해서는, 통상본부 또는 그 승계기관
5.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최소 2년에 1회 회합한다. 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해 회합할 수 있다.

## 정보 교환

1 이 장에 따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요청한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60일 이내에 인쇄하여 또는 전자적으로 제공된다. 이 기간은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는 당사국이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, 연장될 수 있다.

2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 제 7.11 조 정의

이 장의 목적상,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.